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이순우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을 조례에 신설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등포구의회 공인에 특별위원회위원장,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추가
(안 제2조)
-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준용규정 신설(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을 조례에 추가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공인의 종류)에서는 직인의 종류에 “특별위원장인”과 “인사위원장인”을 추가함.
- 안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이미지 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현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준용규정)로 이동하고 준용규정을 현행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으로 변경함. 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시행. 2020.12.03.)으로 공인과 관련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준용규정을 변경한 것임.
- 또한, 안 제14조(준용규정)에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함.

○ 검토 결과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를 추가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준용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현행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
----------	-----

발의년월일: 2023. 6. .

발 의 자: 이순우·양송이·임헌호

유승용·남완현 의원(5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을 조례에 신설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영등포구의회 공인에 특별위원회위원장,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추가(안 제2조)
- 나.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다. 준용규정 신설(안 제14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임위원장인 및 특별위원장인

4. 인사위원장인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

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의정담당주사가”를 “의정팀장이”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준용규정) ①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등포구의회각상임위원회위원장인 영등포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		한변의 길이	비 고
청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인	3.6cm	목인쇄
직인	영등포구의회의장인	2.4cm	목인쇄
	영등포구의회각상임위원회위원장인 영등포구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	2.1cm	목인쇄
	영등포구의회사무국장인	2.1cm	목인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2.1cm	목인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 인 명 칭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기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 속 : 직급 : 성명 :	
	비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u>」 제40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u>-----.</p>
<p>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u>“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국장”</u>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p>	<p>제2조(공인의 종류) ①-----</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회의장”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 이라 한다)---</u></p>
<p>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인</u> 3. (생략) 	<p>②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상임위원장인 및 특별위원장인</u>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7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공

4. 인사위원장인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
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 이
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
합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
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
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
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
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공

인은 의정담당주사가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날인 등) ① (생략)

②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의정팀장이

제13조(사전날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준용규정) ①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을 준용한다.